



제423회 국회 (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직계존속 등에 대한 유족구조금 수령 순위 조정〉

■ 박준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110호)

2025. 3.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은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직계존속 등에 대한 유족구조금 수령 순위 조정	3

I. 제안경위

1. 발의자 : 박준태의원 등 15인
2. 발의일 : 2024. 10. 31.
3. 회부일 : 2024. 11.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유족구조금을 법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하되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피해자가 어릴 때 이혼 후 부양의무를 저버린 생부가 홀로 양육을 도맡았던 어머니와 동일 순위로 인정되어 유족구조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받은 사례가 발생한 바 불합리한 유족구조금의 지급 기준을 정비해야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있음.

이에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부모의 경우 구조피해자를 직접 양육하였는지에 따라 순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며,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피해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부모에 대해서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유족구조금을 받을 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

로써 진정으로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부모의 경우 구조피해자를 직접 양육한 부모를 우선순위로 하고 직접 양육하지 아니한 부모를 후순위로 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나. 유족이 구조피해자의 직계존속으로서 구조피해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족구조금을 받을 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직계존속 등에 대한 유족구조금 수령 순위 조정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현행법 제17조제2항¹⁾은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구조피해자²⁾가 사망하였을 때 제18조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유족에게 유족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항 제1호의 경우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각호에 열거한 순서로 유족구조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구조피해자를 직접 양육한 부모를 선순위로, 직접 양육하지 아니한 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유족이 구조피해자의 직계존속으로서 구조피해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구조피해자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②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18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433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 ② (생략) ③ 유족구조금등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사람 사이에서는 해당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며,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④ (생략) <신설>	법률 제20433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하고, 구조피해자를 직접 양육한 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직접 양육하지 아니한 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구조피해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족구조금

현행	개정안
	을 받을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u>구조피해자에 대한 부양의무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u> 2. <u>구조피해자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4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u>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구조대상 범죄피해³⁾를 받은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등에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⁴⁾

○ 구조금의 종류는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됨. 장해·중상해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 경우에 지급되는 장해·중상해구조금과 유족구조금은 제18조(이하 “유족구조금등”이라 함)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맨 앞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음.⁵⁾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4)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5)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①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한다.

②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하되,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 현행 및 시행예정⁶⁾인 법률 제18조⁷⁾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1순위),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2순위) 및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3순위) 순서로 유족구조금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순위 유족은 동일 순위, 2순위 및 3순위 유족의 경우 열거된 순서대로 하며, 부모의 경우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함.
- 한편, 유족구조금등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법 제18조제4항은 유족이 구조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하거나,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6) 2024. 9. 20. 일부개정되어 2025. 3. 21. 시행예정인 「범죄피해자보호법」(법률 제14583호)으로, 이하 같음.

7)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유족구조금이나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이하 "유족구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2.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서 태아는 구조피해자가 사망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③ 유족구조금등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사람 사이에서는 해당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며,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 ④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구조금등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구조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2. 구조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가 사망하면 유족구조금등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3.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후 유족구조금등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전·후 유족구조금등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하는 경우에는 유족구조금등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 또한, 유족구조금등의 지급 제한과 관련하여, 제19조⁸⁾는 구조피해자 또는 맨 앞의 순위인 유족과 가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구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방조하는 행위,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

8)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2. 직계혈족
3. 4촌 이내의 친족
4. 동거친족

②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구조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2.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3.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
4. 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

5.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다만,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④ 구조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폭행·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2.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加功)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

⑤ 유족구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구조피해자"는 "구조피해자 또는 맨 앞의 순위인 유족"으로 본다.

⑥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하며, 폭행·협박·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또는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증대에 가공(加功)한 부주의·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조 제6항과 제7항에서는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구조피해자에 대한 양육책임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생부가 홀로 양육을 도맡았던 생모와 동일 순위 유족으로 인정되어 유족구조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받을 우려가 있는바⁹⁾, 유족구조금의 지급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¹⁰⁾

□ 이에 개정안은 구조피해자를 직접 양육한 부모를 선순위로, 직접 양육하지 아니한 부모를 후순위로 하며, 유족이 구조피해자의 직계

9) 법 제18조제3호에 따라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구조피해자의 부모의 경우 양육책임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동순위 유족에 해당하게 됨.

10) “‘패륜 아빠’도 유족구조금 받을 수 있다... ‘김레아 사건’의 또 다른 비극”-이혼 후 20년간 양육비 안 준 친부 ‘유족구조금 절반’ 지급 대상 포함, 한국일보, 2024. 10. 8.

“범죄피해 사망자의 ‘유족지원금’도 ‘구하라법’이 적용돼야 한다”, 베이비뉴스, 2024.10.31.

존속으로서 구조피해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구조피해자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이러한 순위 조정 등을 통하여 구조피해자를 양육하지 아니한 부모나 구조피해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유족이 유족구조금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첫째, 현행법 제19조제6항¹¹⁾은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양육책임 미이행 시 급여·보상금 지급 제한에 관한 일반적 입법례는

1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⑥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 관련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 미이행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급여·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현행법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계존속이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명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양육책임 미이행 시 급여·보상금 지급 제한 관련 입법례 >

법조문	급여종류
「공무원연금법」 제6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④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u>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u>	퇴직유족급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4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④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u>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u>	재해유족급여
「군인연금법」 제39조(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③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u>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u>	퇴직유족급여

법조문	급여종류
「군인 재해보상법」 제4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④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해유족급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의3(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② 중앙회는 제21조제1항제5호·제7호에 따른 유족급여·행방불명급여 또는 제31조의2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어선원등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유족급여·행방불명급여, 미지급 보험급여
「선원법」 제103조의2(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①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제101조에 따른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양육책임 이행과 관련한 해양항만관청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 금

□ 둘째, 안 제18조제3항은 구조피해자를 직접 양육한 부모를 선순위로, 직접 양육하지 아니한 부모를 후순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양육의 기간, 시기, 형태 등이 다양할 수 있어 “직접 양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 법무부는, 안 제18조제3항에서 직접 양육하지 않은 부모를 후순위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직접 양육’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이혼 등 사유로 직접 양육은 하지 않으나 부양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안 제18조제5항에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직계존속 등에 대하여 순위를 조정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① 유족 순위 조정의 요건인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의 판단 기준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지구심의회에서 유족 순위 결정 시 혼란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② 현행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이미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감액이 가능하며 ③ 유족 간 불필요한 순위 분쟁 등으로 오히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역행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073